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1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이연희 · 박상혁 · 문진석  
김정호 · 임미애 · 박용갑  
한민수 · 박정현 · 이정문  
박홍배 · 이춘석 · 송재봉  
복기왕 · 어기구 · 안태준  
윤종균 · 김기표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확대된 답례품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③ (생략)</p> <p><u>&lt;신 설&gt;</u></p>	<p>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